

2008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 동향

I. 들어가는 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강행되었던 선진 취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실시된 기사실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의 언론과의 밀월기간이 역대 정부에 비하여 상당히 짧았으며 심하게 얘기하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윽고 2008년 4월에 방영된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를 견잡을 수 없는 촛불시위와 소송돌이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고의적 오보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 방송사의 소송으로 번져 정보노드의 결정이 났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커다랗게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08년도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결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성 선 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법무법인 해미르 미국변호사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프로그램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고찰하고,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적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광우병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본다. 이른바 광우병 방송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보도 취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게재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도의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

1. 개요

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8. 4. 29.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내보낸 내용에 대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으며, 방송은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에 따르면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2. 문제의 내용

MBC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운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래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MBC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 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위험성이 높아진대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MBC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

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으로 보았다. 즉 문제의 표현은 이 사건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정정 내지 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 MBC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부분은 정부의 협상 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정정 내지 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우선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이 과연 사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거리와 법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며 이 판결의 의의를 살펴본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경우 방송의 특성상 일부가 마치 전체에 대한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를 명하고, 반면 비판적인 의견표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의 대상

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근을 냉정하게 한 것으로서 법원의 고민이 엇보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명예훼손 소송

2008년 언론관계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명예훼손 소송이 양적으로는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대법원 85다카29판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에 관하여 상당성의 법리가 제시된 이후 그 후의 판례에서도 상당성의 법리는 확고한 준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당성의 법리는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인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언론의 면책 범위를 확장한 판례이론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 특히 언론기관의 활동영역을 폭넓게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기관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사를 실는 것이 어찌면 본질적이고 기사가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본인을 취재하기보다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기사로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언론의 활

동공간이 넓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상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으로 대법원은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에서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에서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사안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둘째,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이른바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2008. 8. 13. 2008카기2967 판결에서 정청래(전 국회의원, 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요구한 반론보도

문을 기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인인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 초등학교의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조선일보가 4차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4건의 반론 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반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게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론보도청구 내용 중 보도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한 차례 반론을 게재하라”고 판결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별히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전형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공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IV.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

1999년 말에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조세 포탈 혐의 조사 및 구속과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행태나 보도태도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

사를 실은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사 간의 비판 내지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요즘은 언론매체가 미디어비평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비평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념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하게 상호비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사 간의 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론사 간의 상호비판 내지 감시활동은 언론이 하나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현실에서 언론계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경쟁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비판, 때로는 경쟁에 치우친 악의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언론사 간 상호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독자나 시청자로부터도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¹⁾ 언론사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 명예훼손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자유로운 언론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위축효과를 낳게 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 언론사도 그 설립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 존재 내지 공적 인물에 관한 법리를 이용하여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가 피고로 된 일방의 소송형태와 달리 언론사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점에서 유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다가 언론사는 통상의 다른 공인과는 달리 스스로 반론 수단

1) 김재협,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 기준”, 『언론중재』2003년 겨울호, 16면.

2) 배병일, “언론사 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중재』2001년 겨울호, 4면.

3) 성낙승,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2008년 겨울호, 35면.

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고, 언론 매체에 의한 공개적인 주장과 반박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게 상호 비판 및 감시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⁴⁾ 최근에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로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갑 방송사가 을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짠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에서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나아가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며 개별적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그대로 언론사 간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후의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갑 신문이 을 신문을 여당의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아니고, 강제투입부수만을 무가지부수로 보아 무가지 비율을 산정한 후 을 신문의 무가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에서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4) 김재협,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2003년 겨울호, 18-19면.

할 것이므로,” 을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갑 신문이 을 신문사의 사옥이전거부나 지하철 1호선이 을 신문사의 사옥을 우회하면서 급곡선으로 시공된 것이 언론권력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인한 것처럼 느낌을 주는 표현을 써서 기사를 게재하고, 을 신문사의 과거 친일행적이나 기자 대량하고 사태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 만평 등을 게재한 사건에 대하여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에서 역시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 사주의 친일행적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친일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갑 언론사가 정치 강연회에서 초청 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을 언론사를 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보도하는 기사 등을 게재한 사건에 대하여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

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전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는 달리, 명예훼손행위가 적시사실의 진실성이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을 벗어난 경우라도 악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악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사나 나아가 정치·행정적 영역을 비롯한 다른 생활영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상의 판례는 언론사 상호 간의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공적 존재인 언론사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특수한 심사기준과 유사한 개별적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 상호 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언론계 내부의 철저한 상호비판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수사적인 과장표현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가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V. 인터넷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8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여옥 대변인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가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은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한 사건에 대하여 2008. 1. 16. 2006나92006 판결에서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네이버는 100여 개의 우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편집의 면에서,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취재의 면에서,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다른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비록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전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

기 어려우나, 우선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이 과연 사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거리와 법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경우 방송의 특성상 일부가 마치 전체에 대한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를 명하고, 반면 비판적인 의견표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의견 표명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근을 냉정하게 한 것으로서 법원의 고민이 엿보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에 들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8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언론사 상호 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언론계 내부의 철저한 상호비판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수사적인 과장표현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가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8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헌법은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정정보도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책임을 계속 묻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은 해를 거듭하면서도 영원히 경종을 울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